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해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52

발의연월일: 2021. 3. 5.

발 의 자:조해진·허은아·지성호

이철규 · 김선교 · 서일준

윤창현 · 김상훈 · 전주혜

박형수 · 태영호 · 김 웅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우리나라 농어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어업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·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우리나라식량자급률은 45.8%('19년 기준)에 불과하고, 곡물자급률도 21.7%('19년 기준)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.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절실함.

한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·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, 영업이익 1억원 미만 농업법인이 84%로서 경영상태가 매우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 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 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(안 제66조).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### 혀 했 개 정 안 제66조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제66조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 ① 「농어 법인세의 면제 등) ① -----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(이하 "영농조합법인"이라 한 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 ----- 2023년 12월 3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1일-----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이하 "식량작물재배업소득"이라 한 다)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 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. -----.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-----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12월 31일-----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 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 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 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. 이

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 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 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 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 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 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, 그 배당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「초지법」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 지(이하 "초지"라 한다)를 영농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(현물출자와 관 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

③
<u>202</u>
3년 12월 31일
4
<u>2023년 12월 31일</u>

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농지 또 는 초지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 거지역 ·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(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, 제69조의 2부터 제69조의 4까 지 및 제70조에서 "주거지역 등"이라 한다)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(換地處 分)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#### ⑤·⑥ (생 략)

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
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
영농조합법인에 「농업・농촌
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⑦
<u>2023년 12월 31일</u>

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	
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	
는 부동산(제4항에 따른 농지	
및 초지는 제외한다)을 현물출	
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	
적용받을 수 있다.	<u>.</u>
⑧ ~ ⑩ (생 략)	⑧ ~ ⑩ (현행과 같음)